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외교·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적용되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다) · 자동차자기인증 · 부품자기인증 · 점검 · 정비 · 검사 · 폐차 · 등록번호판”을 “같다) · 자동차자기인증 · 부품자기인증 · 점검 · 정비 · 검사 · 폐차 및 등록번호판”으로, “같다) 및 봉인”을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교부 및 봉인”을 “교부”로 한다.

제8조의8제4항 중 “부착 ·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봉인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같다)·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 ·점검·정비·검사·폐차 및 등록번호판----- ----- ----- 같다)----- ----- ----- -----.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2. (생략)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4. 5.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교부 4. 5. (현행과 같음)

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① ~ ③ (생략) ④ 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경호용번호판을 떼 후 폐기하고,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다시 <u>부착</u> · <u>붙인</u> 해야 한다.	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부착</u> -----
---	--